



Ontario

MINISTRY OF PUBLIC AND BUSINESS SERVICE DELIVERY
Ministère des Services au public et aux entreprises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Pays :

Canada

This public document / Le présent acte public

2. has been signed by / a été signé par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agissant en
qualité de

Notary Public

4. bears the seal / stamp of / est revêtu du
sceau / timbre de

Notary Public

Certified
Attesté

5. at / à

Toronto, Ontario

6. the / le **2025-09-11**

7. by / par

Manageanage

8. N° / sous n°

9. Seal / stamp / Sceau / timbre :

10. Signature / Signature :



• This Apostille only certifies the signature, the capacity of the signer, and, where appropriate, the seal or stamp it bears. It does not certify the content of the document for which it was issued. Cette Apostille atteste uniquement la véracité de la signature, la qualité en laquelle le signataire de l'acte a agi et, le cas échéant, l'identité du sceau ou timbre dont cet acte est revêtu. Elle ne certifie pas le contenu du document pour lequel elle a été émise.

• This Apostille is not valid for use anywhere within Canada. L'utilisation de cette Apostille n'est pas valable au Canada.

• If this document is to be used in a country which is not party to the Hague Convention of 5 October 1961, it may need to be legalized by a consular office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i ce document est destiné à un pays non partie à la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il pourrait nécessiter un légalisation par un consulat du pays de destination.

• To verify the issuance of this Apostille, see [www.officialdocuments.mgcs.gov.on.ca/en-US/validity-check/]. Cette Apostille peut être vérifiée à l'adresse suivante : [https://www.officialdocuments.mgcs.gov.on.ca/fr-FR/validity-check/]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상호(명칭)		주식회사 ○ ○ ○ 리아	등기번호	○ ○ ○ ○ ○ ○ ○ ○ ○ ○
본점(주사무소)		○ ○ ○ ○ ○ 시 분당구 성남대로 ○ ○ ○ ○ ○ 번길 (○ ○ ○ ○ ○ 동, ○ ○ ○ ○ ○ 3)		
인감 제출자	자격 / 성명	사내이사 중화인민공화국인 ○ ○ ○ ○ ○		
	생년월일	1 ○ ○ ○ ○ 년 ○ ○ 월 ○ ○ 일생		
발급사유		☐ 카드분실 ☐ 카드훼손 ☐ 인감증명서발급기능(○ ○ ○ ○ ○) ☐ 기타 ()		
매체구분	☐ 인감카드 ☐ HCM ○ ○ ○ ○ ○	인감카드 비밀번호	(변경 후 : ○ ○ ○ ○ ○)	
수수료	금 ○ ○ ○ ○ 원	납부번호		

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성 명 중화인민공화국인 ○ ○ ○ ○ ○

(대리인) 성 명 법무사 ○ ○ ○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귀중

접수번호	인감카드번호	
------	--------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기존 인감카드의 비밀번호와 재발급 받아 사용할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로 된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변경 후)를 기재하며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에는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신청인의 날인란(〃)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의 인감 날인란(〃)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인의 날인란(〃)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법무사 () (7.) (전화)

I was personally present when the paper was signed. 경기도 성남시 (야탑)
 When the paper was signed, I was personally present.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를 위임함.

2025 년 월 일

인감신고인 성 명 중화인민공화국인

Aug. 31, 2025